

토 론 문

-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 중심으로 -

SK텔레콤 CR전략실장 이상현

□ 망중립성 논의 경과

-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주요국에서 망중립성 이슈에 대해 정책당국은 물론 CPND를 아우르는 산업계內 모든 참여자들이 치열한 논쟁을 거쳐 옴
 - 이 과정에서 망중립성 개념은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권 보장에서 망의 안정성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ISP의 트래픽 관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 ※ 소수 이용자(Heavy user)의 통신망 자원 독점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용권 보장 및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한 생태계 구축도 망중립성 논의의 핵심사항
- 해외 주요국의 경우, 자국 ICT 산업의 강점 및 산업발전 전략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법제화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
 - (미국) 오바마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망중립성 법제화를 하였으나, 관련 시장 및 사업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정함
 - ※ 그간 망중립성 정책을 선도해 온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망중립성 규제 완화로 정책 기조 변화가 예상됨
 - (EU) 기본적으로 법제화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EU 권역內 단일규제 필요성 차원에서 최근 망중립성을 법제화하였으며, 미국과 같이 원칙만 규정하는 형식을 취함
 - (영국, 일본) 통신사업자들이 시장자율적(Self-Regulation)으로 망중립성 행동원칙 등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는 형태로, 정부 주도의 별도 제도화는 추진되지 않았음

※ (영국) ISP사업자 협의체인 BSG(Broadband Stakeholder Group)는 2012년 7월 'Open Internet Code of Practice'를 발표하고 ISP사업자들이 Open Internet Code of Practice 규약에 서명

(일본) ISP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08년 '대역제어 운영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 총무성은 현재까지 시장에서 문제가 없는 만큼 법제화는 필요없다는 입장

- 국내에서도 법제화보다는 정부 주관하에 4년('11년~'14년)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정부, 사업자, 학계, 소비자단체, 연구기관)의 협의를 통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 형식으로 입장을 정리
 - 급변하는 글로벌 ICT 환경에서 신기술 및 혁신적 서비스 출현 등에 유연한 대처를 위해서는 법제화보다는 가이드라인 및 기준 형태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 결과에 따른 것임
 - 同 가이드라인·기준이 비록 법령은 아니지만 ICT 생태계內 참여 사업자들이 함께 만든 것으로, 각자의 책임 하에 준수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망중립성과 관련한 사업자간 분쟁이나 논란은 없는 상황

□ 제로레이팅 관련

- 제로레이팅은 과거부터 일반적으로 존재해왔던 사업자간 제휴상품이나 요금 할인상품으로 볼 수도 있으나, 최근 망중립성의 관점과 연계하여 새롭게 논의/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
 - 제로레이팅과 관련하여 차별이나 형평성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 이용자 측면에서 서비스 이용부담 경감, 산업 측면에서 새로운 서비스/콘텐츠 이용 활성화 등의 장점이 존재
-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에서도 제로레이팅을 허용하고 있으며, 성급한 규제 도입이나 정책방향 결정보다는, Wait & See Stance를 가지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제로레이팅에 대해 간단한 원칙만을 제시하고, 문제가 될 경우 Case-by-Case로 판단하겠다는 입장

- EU의 경우, 제로레이팅을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한 ISP-최종 이용자간 상업적 거래로 보아 허용하는 입장이며, 문제가 되는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회원국 규제기관에서 판단하도록 위임
- 이미 개방되어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규제 도입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규제 및 시장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 이와 같이,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를 위한 세부 Rule-setting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사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
 - 사후규제의 경우에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부담 경감, 제휴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확산, 양면시장의 순기능 활성화 등 제로레이팅이 갖는 장점과 특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규제방법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
-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핵심기반이 되는 ICT 산업 및 Biz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규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발전 전략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발제문에서 제로레이팅을 사전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자는 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함